

문화·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(제15조제1항 관련)

1.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·예술사업자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,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
- 나. 국립중앙도서관,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(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)
- 다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, 국·공립 대학박물관
- 라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국·공립 미술관, 국·공립 대학미술관

2.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·예술사업자

- 가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
- 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, 사립 대학미술관

3.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·예술사업자

- 가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
- 나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
- 다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, 문화의 집,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지방문화원
- 라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(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
- 마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(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